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HRC/35/4

배포:일반
2017년 5월 1일
원문: 영어

인권이사회

35차 회기

2017년 6월 6-23일

Agenda items 2 and 3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연례보고서 및 고등판무관실과 유엔총장의 보고서

발전권을 포함하는 모든 인권,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증진 및 보호

양심적 병역거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분석 보고서

요약

이 보고서는 인권이사회가 결의 20/2호를 통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모든 당사국, 관련된 유엔 기관, 프로그램 및 기금, 정부간 기관 및 비정부기관, 각국인권단체에 자문을 구하여 양심적 병역거부, 특히 모범적인 관행과 미해결 과제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4년 단위의 보고서로 준비하도록 요청한 것에 따라 마련되었다.

I. 개요

1. 유엔인권이사회는 제 20/2 호 결의를 통해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에 모든 당사국, 관련된 유엔 기관, 프로그램 및 기금, 정부간 기관 및 비정부기관, 각국인권단체에 자문을 구하여 양심적 병역거부, 특히 모범적인 관행과 미해결 과제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4 년 단위의 보고서로 준비하도록 요청했다.

2. 2017 년 1 월 11 일자 구상서(note verbale)과 편지에 따라 OHCHR 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결의 제 20/2 호의 요청에 관련된 정보가 있다면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19 개의 당사국을 비롯하여 모든 지역과 각국 인권기관 6 개 및 18 개의 비정부 기관에서 정보를 제공했으며, OHCHR 웹사이트에서 제공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¹ 2013 년 6 월의 분석 보고서를 포함하여 인권고등판무관의 이전 보고서들도 동일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이 보고서의 구성은 2013 년 이후의 새로운 발전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국제법 체제, 각국의 국내법과 관행 및 모범 사례(sect. III), 남아있는 과제(sect. IV) 등으로 구성되며, 끝 부분은 결론과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 방침 및 관행에 대한 권고 사항(sect. V)을 담고 있다.

II. 새로운 발전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국제법 체제

A. 양심적 병역거부권

4.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사상, 양심,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8 조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동 규약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1993 년에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살상용 무기를 사용해야 할 의무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나 신앙을 공표할 권리와 심각한 충돌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그러한 권리가 제 18 조에서 파생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²

5.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일반논평 제 22 호(1993) 이후에도 다수의 개인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했다.³ 김종남 등 338 인 대 대한민국 사건에서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내재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군 복무가 개인의 종교나 신념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병역 의무에서 면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⁴ 이러한 권리는 강압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위원회의 대다수는 양심이나 종교 때문에 무기를 사용할 수 없기에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을 강제로 입영시키는 행위는 규약 제 18 조 제 1 항에서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종교 또는 신앙을 가질 권리(*forum internum*)와 조화되지 않는다고 보았다.⁵ 그러나 4 명의 위원들은 개별의견(동의)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신념을 표현하는 행위(*forum externum*)로 보았던 위원회의 예전 접근 방식을 지지했으며, 규약 제 18 조 제 3 항을 고려할 때, 당사국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⁶ 더욱이 종교 또는

¹ www.ohchr.org/EN/Issues/Pages/ListofIssues.aspx 참조

²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제 22 호 (1993), 제 11 항

³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2012 년 이전에 제기된 개인청원을 알아보려면 A/HRC/23/22, 8-13 항과 양심적 병역거부(유엔, Sales No. E.12.XIV.3)를 참조한다.

⁴ 개인청원 제 1786/2008 호, 2012.10.25.에 채택한 견해, 제 7.4 항

⁵ Ibid. 7.5 항; 개인청원 제 1853/2008 호와 1854/2008 호, Atasoy and Sarkut v. Turkey, 2012.3.29 에 채택한 견해, appendix II(“살인을 거부할 권리는 온전히 인정되어야 한다.”)

⁶ Jong-nam Kim et al. v. Republic of Korea, appendices II-IV 참조. 또한 개인청원 제 2179/2012 호, Young-kwan Kim et al., 2014.10.15 에 채택한 견해, appendix I; 개인청원 제 2218/2012 호, Abdullayev v. Turkmenistan, 2012.3.25.에 채택한 견해,

신앙의 자유에 대한 특별보고관과 자의적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를 개인의 종교 또는 신앙의 표현으로 간주한다.⁷

6. 2014 년에 *김영관 등 50 인 대 대한민국* 사건에서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규약 제 18 조 제 1 항의 위반을 선언했으며, 병역을 거부한 것에 대한 처벌로서 50 명의 여호와의 증인을 수감시킨 것은 제 9 조의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결정문 제 7.5 항에서 규약 제 19 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합법적으로 행사한 것을 구금으로 처벌하는 것이 자의적 구금에 해당하는 것처럼 규약 제 18 조에 보장된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합법적으로 행사한 것을 처벌하려는 구금도 자의적인 처사로 보았다.

7.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5 년과 2016 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개인청원 10 건에 대한 견해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규약 제 10 조의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에 대한 존중, 인간적인 처우를 받을 권리 및 청원인들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고 결정했다⁸. 또한 위원회는 규약 제 18 조 제 1 항에 규정된 자유의 기본적 특성이 규약 제 4 조 제 2 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국가적 긴급 상황에서도 이 조항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반영되어 있음을 상기했다.

8.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3 년과 2014 년에 채택한 최종견해에서 규약 18 조가 비종교인의 양심의 자유도 보호한다는 점을 상기하면서⁹, 국내법으로 규약 제 18 조와 제 26 조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청했다. 위원회는 또한 대체복무마련이 병역거부를 정당화하는 신앙의 특성에 관계없이(양심에 근거한 신앙이 종교적인 것이든 비종교적인 것이든 관계없이)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¹⁰. 각주 10. 규약 제 18 조는 유신론, 비신론, 무신론적 믿음뿐만 아니라 종교나 신앙을 밝히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며, 제 18 조의 적용은 전통적인 종교들, 또는 전통적인 종교와 유사한 제도적인 성격이나 관행을 가진 종교와 신앙에 제한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종교”와 “신앙”은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¹¹. 따라서 당사국이 교리상 무기 사용을 금하는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된 사람에게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한다면, 규약 제 18 조의 위반으로 간주된다¹².

9. 규약을 비준하지 않은 일부 당사국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일례로 싱가포르의 이 보고서에 대한 의견에서 유엔인권이사회 제 20/2 호 결의는 국제법 및 적용가능한 인권기준에 규정된 바를 넘어선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한 싱가포르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공공질서, 일반의 복지를 위하여 정당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만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고 규정한 세계인권헌장 제 29 조를 언급했다. 또한 국방은 국제법상 기본적 주권이므로 개인의 신앙이나 행위가 이러한 기본적 주권에 반할 경우, 국가안보를 보존, 유지할 국가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appendices I and II; 개인청원 제 2221/2012 호, *Mahmud Hudaybergenov v. Turkmenistan*, 2015.10.29.에 채택한 견해, appendix; 개인청원 제 2222/2012 호, *Ahmet Hudaybergenov v. Turkmenistan*, 2015.10.29.에 채택한 견해, appendix; 개인청원 제 2223/2012 호, *Japparow v. Turkmenistan*, 2015.10.29.에 채택한 견해, appendix; 개인청원 제 2219/2012 호, *Nasyrlyayev v. Turkmenistan*, 2016.7.15.에 채택한 견해, annex; 개인청원 제 2220/2012 호, *Aminov v. Turkmenistan*, 2016.7.14.에 채택한 견해, annex; 개인청원 제 2224/2012 호, *Matyakubov v. Turkmenistan*, 2016.7.14.에 채택한 견해, annex; 개인청원 제 2225/2012 호, *Nurjanov v. Turkmenistan*, 2016.7.15.에 채택한 견해, annexes I and II; 개인청원 제 2226/2012 호, *Uchetov v. Turkmenistan*, 2016.7.15.에 채택한 견해, annex.

⁷ A/HRC/7/10/Add.2, 46 항과 56 항 참조; A/HRC/10/8/Add.4, 51 항; A/HRC/10/21/Add.1, 144-145 면; A/HRC/19/60/Add.2, 54 항; A/HRC/23/51, p. 28; A/HRC/28/66/Add.2, 63 항; 자의적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opinion No. 42/2015, 42 항; Heiner Bielefeldt, Nazila Ghanea and Michael Wiener,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An International Law Commentary*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265-275 면과 288-291 면

⁸ *Abdullayev v. Turkmenistan*, *Mahmud Hudaybergenov v. Turkmenistan*, *Ahmet Hudaybergenov v. Turkmenistan*, *Japparow v. Turkmenistan*, *Nasyrlyayev v. Turkmenistan*, *Aminov v. Turkmenistan*, *Matyakubov v. Turkmenistan*, *Nurjanov v. Turkmenistan*, *Uchetov v. Turkmenistan*, 개인청원 제 2227/2012 호, *Yegendurdyew v. Turkmenistan*, 2016.7.14.에 채택한 견해.

⁹ CCPR/C/KGZ/CO/2, 제 23 항

¹⁰ CCPR/C/UKR/CO/7, 제 19 항

¹¹ 일반논평 제 22 호, 제 2 항

¹² CCPR/C/KGZ/CO/2, 제 23 항

주장한다¹³. 규약에 서명했으나 아직 비준하지 않은 쿠바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국제인권기준이 없으므로, 이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해석 및 일반 논평에 근거한 개념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10. 표결 없이 채택한 다수의 결의에서, 인권이사회와 인권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세계인권헌장 제 18 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9 조에 보장된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의 합법적인 행사로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¹⁴.

11. 지역 단위에서 보자면,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법무관(Advocate General)은 2014 년에 제시된 의견을 통해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 10 조 제 2 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시적으로 언급, 인정하고 있으며 이 권리의 행사에 관한 국내법도 이와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¹⁵. 2016 년에 유럽인권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관련 특별 위원회가 국내법에 요구된 절차상의 효율성 및 평등한 대우(equal representation)를 보장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위반한 것으로 판결했다¹⁶. 또한 청년 권리에 대한 이베로-아메리칸 협정 제 12 조 제 1 항은 청년들은 강제적 병역 의무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¹⁷

B. 징집병과 자원병을 비롯한 군인의 양심적 병역거부 청구권

12. 인권이사회와 구 인권위원회는 군 복무 중인 사람들도 양심적 병역거부 의사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였으며, 군 복무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지위를 얻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¹⁸. 제 24/17 호 결의에서 인권이사회는 징집병뿐만 아니라 자원병의 양심적 병역거부도 인정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추세임을 지적하면서 각 당사국에게 군 복무 전후 또는 군 복무 중에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을 허용하고 예비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13. 종교 및 신앙의 자유에 대한 특별보고관은 서신 및 미션 보고서에서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또는 이미 군사 훈련이나 군의 활동에 참여한 후에도 양심적 병역거부 의사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였다¹⁹. 특별절차에 대한 권한을 가진 3 명의 관계자는 도덕적인 이유로 이라크 전쟁은 물론이고 다른 형태의 분쟁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고 스스로 결정한 후에 허가를 받지 않고 군에서 이탈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관해 공동 긴급 청원(joint urgent appeal)을 제출했다²⁰.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각 당사국에게 국내법으로 개인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있으며, 군 복무를 시작하기 전이나 군 복무 중에 언제든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²¹.

14.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은 유럽연합 지침 제 2004/84/EC 호²²의 “군 복무 이행 거부”라는

¹³ A/HRC/23/G/6, annex; A/HRC/23/22, 15 항; E/CN.4/2006/51, 18 항; E/CN.4/2002/188, annex.

¹⁴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제 24/17 호와 제 20/2 호, 인권위원회 결의 제 2004/35 호, 제 2002/45 호, 제 2000/34 호, 제 1998/77 호, 제 1995/83 호, 제 1993/84 호, 제 1991/65 호, 제 1989/59 호. 이 점과 관련된 최초의 결의인 1987/46 호 결의는 찬성 26 표, 반대 2 표, 기권 14 표로 채택되었다.

¹⁵ 유럽사법재판소, case C-472/13, Shepherd v. Bundesrepublik Deutschland, Advocate General Sharpston 의 2014.11.11 자 의견, 52 항.

¹⁶ 유럽인권재판소, Papavasiliak v. Greece, application No. 66899/14, 2016.9.15 자 판결. 지역 단위 판례를 알아보려면 A/HRC/23/22, 16-24 항과 Özgür Heval Çınar,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Palgrave Macmillan, 2013), 95-156 면을 참조한다.

¹⁷ Ignacio Perelló 의 *Convención Iberoamericana de Derechos de los Jóvenes: Balance y reflexiones — a cinco años de su entrada en vigor*, 56-60 면 참조. www.oij.org/file_upload/publicationsItems/document/20130114165345_51.pdf.

¹⁸ 인권이사회 결의 제 24/17 호, 인권위원회 결의 제 1998/77 호, 제 1995/83 호, 제 1993/84 호.

¹⁹ E/CN.4/2006/5/Add.1, 139 항; A/HRC/19/60/Add.1, 56 항; A/HRC/22/51/Add.1, 69 항.

²⁰ A/HRC/23/51, 28 면.

²¹ CCPR/C/KAZ/CO/1, 23 항; CCPR/C/CHL/CO/5, 13 항; CCPR/C/SVK/CO/3, 15 항.

²² 제 3 국 출신 또는 무국적자의 난민 또는 국제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 자격 요건 및 보호 내용에 관한 유럽연합

표현은 징집병과 지원병을 포함하여 군 복무 중인 모든 사람을 가리키며 병참 및 지원업무를 돌보는 인력을 포함하여²³ 군 내부의 모든 인력에 적용되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모집된 방식은 이와 관련이 없음을 강조했다. 2015 년에 유럽사법재판소는 군인의 병역 거부 행위로 인해 발생한 징역형이나 제대와 같은 조치는, 국가가 군을 유지할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유념할 때에, 박해 행위에 버금갈 정도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당사국은 이 사건이 실제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²⁴

C. 선택적 양심적 병역거부

15. 2013 년 12 월에 발표된 국제 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 10 호에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부분적 병역거부자 또는 선택적 병역거부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²⁵ 부분적 병역거부자 또는 선택적 병역거부자는 일부 상황에서는 무력 사용이 정당화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무력 사용을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후자의 경우에는 무력 사용을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반해 평화주의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는 데 반대하며 모든 형태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다. 유엔 총회는 제 33/165 호 결의에서 선택적 거부의 한 가지 형태를 암묵적으로 인정했으며, 군 복무나 경찰 복무의 형태로 인종차별정책의 이행을 지원하는 것을 양심적으로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국적국에서 떠날 것을 강요당한 사람들에게 망명을 허가하거나 제 3 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당사국들에게 요청했다. 자의적구급에 관한 실무그룹과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에 대한 특별보고관도 선택적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사건들을 받아들였다.²⁶

D. 양심적 병역거부자 신분의 신청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

16. 인권이사회와 구 인권위원회는 다수의 결의를 통해 조사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당사국에게 독립적이고 공평한 의사결정기관을 마련하여 각 신청자의 양심적 병역거부 의사가 진지한 것인지 판단하도록 요청했다.²⁷ 이러한 결의들과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 22 호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특정한 종교나 신앙을 근거로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17.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요구되는 제도적, 절차적 보호 장치에 대한 지침도 제공한다. 가능하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지위에 관한 결정은 해당 목적을 위해 설치된 공정한 재판소 또는 일반 민간 법원에 맡겨야 하며, 국제인권법에 규정된 모든 법적 보호 장치를 적용해야 한다. 또한 독립적인 민간 사법기구에 항소할 권리도 반드시 인정해주어야 한다. 의사결정기구는 군 당국과 철저히 분리되어야 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심리(hearing) 기회와 법적 대리인을 선임할 자격을 주어야 하며 관련된 증인을 소환하도록 허락해야 한다.²⁸

E.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반복적인 재판 및 처벌 금지

18. 인권이사회는 재입영통지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거듭 처벌하는 것은 동일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지침, 2004/83/EC, 2004.4.29.

²³ Shepherd v. Bundesrepublik Deutschland, Advocate General Sharpston 의 의견, 32 항과 35 항

²⁴ 사건번호 C-472/13, Shepherd v.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16.2.26 자 제 2 재판부의 판결, 57 항

²⁵ 가이드라인의 3 항과 11 항 참조

²⁶ E/CN.4/2005/6/Add.1, p. 18; A/HRC/23/51, 28 면

²⁷ 인권위원회 결의 제 1998/77 호; 인권이사회 결의 제 24/17 호.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 22 호, 제 11 항

²⁸ E/CN.4/1992/52, 185 항; A/HRC/6/5, 22 항; A/HRC/19/60/Add.1, para. 56, A/HRC/22/51/Add.1, 69 항. CCPR/C/ISR/CO/4, 23 항.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²⁹. 자의적구금 실무그룹과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반복적으로 구금하는 것을 규약 제 14 조 제 7 항 위반으로 본다³⁰.

19.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5 년과 2016 년에 다섯 건의 개인청원에 대해 채택한 견해에서 병역 의무를 거부하거나 군 복무 이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터키 형법의 동일한 조항에 따라 청원인들을 두 번이나 재판에 회부하고 처벌한 것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와 일사부재리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했다³¹.

F. 대체복무

20. 당사국이 원한다면, 규약 제 8 조 3 항 (c)호 (ii)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강제적 군 복무에 갈음하는 대체복무를 마련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국내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요구되는 국가 복무는 강제 노역의 의미에 포함되는 복무가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국제법에는 당사국이 그러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조건이 없으므로, 당사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요구되는 추가 조치 없이 바로 군 복무를 면제해줄 수 있다.

21. 뿐만 아니라 인권이사와 구 인권위원회는, 각 당사국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유와 양립할 수 있으며 비전투적 또는 민간 성격의 복무로서 공익에 기여하고 처벌적 성격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³²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대체복무의 기준을 마련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복무하도록 요구하거나, 사회 기관에서 복무하는 사람이 기본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급여를 적게 지급하거나, 관련된 당사자들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같이 “처벌적 성격”의 대체복무 요건의 사례를 언급했다³³. 또한 당사국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면제비를 납부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대체복무를 제공할 때에는 접근성과 비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³⁴.

22. 국제인권법은 대체복무 허용기간에는 엄격한 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대체복무기간이 군 복무를 초과할 경우, 초과기간이 관련된 구체적인 복무의 특성이나 복무 이행을 위한 특수한 훈련의 필요성과 같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대체복무는 차별적이라고 할 수 있다³⁵.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민간대체복무기간을 군 복무 기간과 동일하게 단축하거나 적어도 초과하는 기간을 단축하도록 제안하고 있다³⁶.

23. 양심적 병역거부자 신분의 신청기간 제한에 관해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두 차례의 보고서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심지어 군사 훈련이나 군사활동에 이미 참여한 후에도 양심적 병역거부 의사가 발전할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에 엄격한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³⁷.

²⁹ 인권이사회 결의 제 24/17 호. 자유권규약위원회, 재판소 앞에서 동등할 권리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 32 호(2007), 55 항; CCPR/C/GRC/CO/2, 37-38 항.

³⁰ E/CN.4/2001/14/Add.1, 54-55 면; E/CN.4/2005/6/Add.1, 22 면; A/HRC/10/8/Add.4, 50 항과 68 항; A/HRC/16/53/Add.1, 391 항.

³¹ Abdullayev v. Turkmenistan, Nasrlyayev v. Turkmenistan, Aminov v. Turkmenistan, Matyakubov v. Turkmenistan and Nurjanov v. Turkmenistan

³² 인권이사회 결의 제 24/17 호; 인권위원회 결의 제 1998/77 호.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군 영역이 아니며 군의 감독을 받지 않는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마련해줄 것을 권고했다. (CCPR/C/TKM/CO/2, 41 항).

³³ CCPR/C/RUS/CO/6 and Corr.1, 23 항

³⁴ CCPR/C/MNG/CO/5, 23 항

³⁵ 자유권규약위원회, 개인청원 제 666/1995 호, Foin v. France, 1999.11.3 에 채택된 견해, 10.3 항.

³⁶ CCPR/CO/79/RUS, 17 항; A/56/253, annex, 28 항

³⁷ A/HRC/19/60/Add.1, 5 항; A/HRC/22/51/Add.1, 69 항

G. 난민 지위 신청

24. 세계인권선언 제 14 조에 의거하여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비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구 인권위원회는 난민지위에 관한 1951 년 협약과 1967 년 의정서에 제시된 난민의 정의의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는 개별 사안에 직면한 국가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어떠한 조항도 존재하지 않거나 어떤 적절한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군복무에 대한 거부로 인해 국적국에서 박해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망명을 허락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권장했다³⁸.

25. 2013 년 UNHCR 의 국제 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 10 호는 (1991 년에 발행된) 특정 형태의 입영 기피에 관한 기존의 입장을 대체하는 것이며, 정부, 법조인, 의사결정권자, 사법부 및 난민지위에 대한 결정을 이행하는 UNHCR 직원들에게 해석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5 가지 사항을 다루고 있다: (a) 양심상의 이유로 국가가 부과하는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경우, (b) 인간 행동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분쟁에 대한 거부, (c) 국가가 부과하는 병역의 조건, (d) 국가가 아닌 무장 단체의 강제 입영 및 복무 요건, (e) 불법적인 아동 징집.³⁹

26. 개인청원 제 2007/2010 호 X v. Denmark 사건에 대해 2014 년에 채택된 견해의 9.3 항에서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신뢰할 만한 출처를 통해 입영기피자들이 에리트레아로 송환될 경우 심각한 수준의 학대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으며, 양심을 근거로 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청원인의 주장에 유의했다. 위원회는 청원인을 덴마크에서 에리트레아로 송환하는 것은 규약 제 7 조(고문 또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 및 처벌의 금지)의 위반에 해당하므로, 제 18 조에 대한 청원인의 주장은 검토하지 않았다.

III. 모범사례

A. 대체복무

27. 인권이사회는 제 24/17 호 결의에서 군 복무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정보와 양심적 병역거부자 신분을 획득하는 방법을 알리는 계획을 환영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이 보고서의 준비 과정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오스트리아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양식을 의무적 군 복무에 관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다⁴⁰.

28. 다른 출처에서 이미 확인된 것처럼, 노르웨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중지하고 그들을 야에 병역에서 면제하고 있다⁴¹. 또 다른 모범적인 사례로 덴마크의 민간복무기간이 비처벌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알바니아, 독일, 이탈리아, 슬로베니아도 징집제도를 유예하기 전에는 민간복무기간을 비처벌적인 수준으로 유지했다.) 덴마크에서는 군 복무와 민간복무 기간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29. 아르메니아는 2013 년에 유럽인권재판소의 다수 판례를 받아들여서 민간대체복무법을 개정하고 당시 수감 중이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석방하는 규정을 시행했다. 2017 년 2 월 기준으로 아르메니아에서는 대체복무를 이행한 여호와의 증인은 250 명을 넘어서었다. 한 가지 제보에 따르면 민간대체복무장소의 감독자를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이러한 변화의 결과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⁴²

³⁸ 인권이사회 결의 제 24/17 호; 인권위원회 결의 1998/77 호

³⁹ 가이드라인의 17-41 항 참조

⁴⁰ 국제화해연대에서 제공한 정보

⁴¹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한 정보

⁴² 여호와의 증인 법률 고문사무실에서 제공한 정보

B. 징집병과 자원병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30.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의 군 복무법에 따르면 무장 부대에서 복무하기로 계약한 자는 계약상의 날짜가 도래하기 전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매년 양심적 병역거부 때문에 더 이상 복무를 원치 않는 사람을 포함하여 다수의 복무자들이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보고된다⁴³.

31. 슬로베니아 병역법 제 38 조는 징집병도 군 복무 중이나 복무를 마친 후에 동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다⁴⁴.

C. 동원 기간 중의 신청과 전면적인 병역거부

32.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3 년 7 월에 핀란드 정부의 6 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채택했다. 이 최종 견해에서 위원회는 동원기간 또는 심각한 내란 중의 비군사 복무 신청을 허용하는 입법 개정을 환영했다⁴⁵. 핀란드 비군사복무법에는 심각한 내란 및 동원 기간을 포함하는 특수한 경우의 비군사복무 신청을 처리하는 조항이 있다. 감찰형에 관한 법(Act on monitoring sentences, 제 330/2011 호)에 의하면 일괄적인 징역형에 갈음하는 감찰형을 부과할 수 있는데, 군 복무와 비군사 복무를 모두 거부하는 전면적 거부자에게 징역형이 아니라 대신 전자감시형 가택구금형을 허용하는 것이다⁴⁶.

33. 우크라이나의 경우, 민·형사 고등특수법원의 2015.6.23.자 판결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는 항소할 수 없는 확정판결로서, *바야탄 대 아르메니아* 사건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적용하여 당사국이 무장 분쟁 중에 동원령을 내리거나 정기 소집기간이 아닌 경우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⁴⁷.

D.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을 검토하는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절차; 양심적 병역거부자 상호간의 차별 금지

34. 유엔인권이사회는 제 24/17 호 결의에서 일부 당사국이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을 조사 없이 승인하는 사실을 환영했다. 보고에 의하면 (징병제를 폐지하기 전의 독일과) 핀란드에서는 승인된 양식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 의사를 선언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이 승인된다⁴⁸.

IV. 남아있는 과제

A.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의 인정 및 시행의 부족; 반복되는 재판과 처벌

35.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6 년 11 월에 채택한 아제르바이잔의 제 4 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양심상 가지게 된 신념의 종류에 따라 제한을 두지 않고 헌법상 인정된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실질적인 효력을

⁴³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옴부즈맨이 제공한 정보

⁴⁴ 슬로베니아가 제공한 정보

⁴⁵ CCPR/C/FIN/CO/6, 14 항

⁴⁶ CCPR/C/FIN/6, 30 항과 153 항; 국제화해연대와 Conscience and Peace Tax International 이 자유권규약위원회 108 차 세션에 제출한 자료, 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INT%2fCCPR%2fNGO%2fFIN%2f14402&Lang=en.

⁴⁷ 여호와의 증인 법률 고문사무실에서 제공한 정보

⁴⁸ 국제화해연대가 제공한 정보

부여하는 법안을 지체 없이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를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모든 제재를 철폐할 것을 권고했다⁴⁹.

36. 볼리비아 다민족 공화국에는 민간대체복무가 없으므로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3년 10월에 채택한 최종견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법적 조항을 공포하고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접근할 수 있으며 복무의 성격이나 비용, 기간 만에서 처벌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은 민간대체복무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⁵⁰.

37. 2016년 11월에 동위원회는 콜롬비아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했다. 헌법재판소는 병역 신분을 해결하지 못한 젊은 남성을 찾아낼 목적의 무차별적으로 체포하여 소집 장소에 데려가는 관행에는 자의적 체포가 포함된 것이라고 판결했다(2001년 C-879 결정 및 2014년 T-455 결정). 콜롬비아는 이러한 관행을 부인하지만 위원회는 최근에 발생한 체포에 관한 보고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콜롬비아 정부에게 보안대원에 대한 훈련을 개선하여 자의적 구금, 특히 군 입영의 목적으로 그러한 구금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채택하고, 자의적 구금을 당했다는 모든 주장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철저하면서도 공평한 조사를 이행하고 범법자는 기소, 처벌할 것을 권고했다⁵¹.

38.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5년 2월 에리트레아 정부의 제 4차 및 제 5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당사국에게 무기한 국가복무와 사와 군사훈련센터의 강제등록을 중단하고 국가복무 의무기간을 원래의 18개월로 축소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며 복무를 마친 여성은 즉시 동원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⁵² 에리트레아 인권조사위원회는 2016년 5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군복무/국가복무 프로그램이 만료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995년에 공포된 법령에 규정된 18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10년 이상 초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위원회는 이러한 관행이 정당하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했다⁵³.

39. 2013년 7월에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핀란드에게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특혜가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우려를 재차 표명하면서 핀란드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온전히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⁵⁴.

40. 2016년 7월에 동 위원회는 카자흐스탄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민간대체복무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을 검토하라는 예전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유의했다. 카자흐스탄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를 마련해주어야 한다⁵⁵.

41. 동 위원회는 2014년 3월에 키르기스스탄 정부에게 교리상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등록된 종교 단체에 가입된 사람에게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명했다. 키르기스스탄은 제 18조에서 종교가 없는 사람의 양심의 자유도 보호한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규약 제 18조와 제 26조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⁵⁶.

⁴⁹ CCPR/C/AZE/CO/4, 35 항

⁵⁰ CCPR/C/BOL/CO/3, 21 항. 볼리비아 다민족국 옴부즈맨 사무실에서 제공한 정보

⁵¹ CCPR/C/COL/CO/7, 34-35 항. 콜롬비아와 콜롬비아 옴부즈맨 사무실에서 제공한 정보

⁵² CEDAW/C/ERI/CO/5, 9 항

⁵³ A/HRC/32/47, 35 항과 67 항. 여호와의 증인 법률고문 사무실에서 제공한 정보

⁵⁴ CCPR/C/FIN/CO/6, 14 항. Finnish Union of Conscientious Objectors 에서 제공한 정보

⁵⁵ CCPR/C/KAZ/CO/2, 45-46 항

⁵⁶ CCPR/C/KGZ/CO/2, 23 항

42.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5 년 11 월에 채택한 최종견해에서 대한민국이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다수의 사건에서 위원회의 견해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당사국에게 군 복무에서 면제받을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즉시 석방할 것을 요청했다⁵⁷. 위원회는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개인정보의 온라인 공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그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군 복무에서 면제받을 권리를 행사한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 그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⁵⁸. 이 최종견해는 종교 및 신앙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는 보고서에 인용되었다. 특별보고관은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전과기록을 떠안고 있으며 그로 인해 민간 분야의 고용 기회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전과자 또는 ‘반역자(traitor)’라는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결혼에 어려움을 겪거나 가족들에게 외면당하는 등 사회적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⁵⁹.

43.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3 년 7 월에 타지키스탄의 제 2 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채택했다. 이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재차 우려를 표명하면서 개인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법으로 인정하고 당사국이 원한다면 처벌적이 아닌 대체복무 설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⁶⁰.

44. 동 위원회는 터키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징역형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들이 군복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이동의 자유나 투표권과 같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일부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터키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규제하는 법을 마련하여 처벌적이거나 차별적이 아닌 대체복무를 제공해야 하며, 그러한 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모든 소송절차를 중단하고 이미 부과된 형 집행도 중지해야 한다⁶¹. 2014 년에 터키는 민간대체복무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동 위원회는 최종견해에 대한 추가 보고서를 통해 터키 정부의 답변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E: 답변은 (정부가 취한) 조치가 위원회의 권고와 상반되는 것임을 보여준다.”⁶²

45.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7 년 3 월에 투르크메니스탄의 제 2 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최종견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계속 인정하지 않고 병역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을 반복 기소, 처벌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확히 인정하는 것을 목표로 지체 없이 법을 개정하고, 군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군의 명령의 받지 않는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를 마련하고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모든 기소를 중지하고 현재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석방하도록 권고했다⁶³.

46. 2013 년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우크라이나에서 양심에 자리잡은 비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과 모든 종교에 근거한 신념을 가진 사람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확대하는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신앙의 특성이 어떠한 간에(또는 양심에 자리잡은 신념이 종교적인 것이든 종교와 무관하든 관계없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화하는 신앙이라면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차별없이 대체복무 마련을 제공해야 하며, 대체복무는 군 복무와 비교할 때에 특성이나 기간에 있어서

⁵⁷ CCPR/C/KOR/CO/4, 6 항과 45 항

⁵⁸ Ibid., 44-45 항; Connection e.V., 전쟁없는세상 및 여호와의 증인 법률고문사무실에서 제공한 정보

⁵⁹ A/HRC/32/53, 26 번; 2015.12.11.자 편지, [https://spdb.ohchr.org/hrdb/32nd/public_-_AL_Rep_Korea_11.12.15_\(4.2015\).pdf](https://spdb.ohchr.org/hrdb/32nd/public_-_AL_Rep_Korea_11.12.15_(4.2015).pdf). See also contribution from the Quaker United Nations Office

⁶⁰ CCPR/C/TJK/CO/2, 21 항; CCPR/CO/84/TJK, 20 항.

⁶¹ CCPR/C/TUR/CO/1, 23 항

⁶² CCPR/C/112/2, 18-19 번. Association for Conscientious Objection 에서 제공한 정보

⁶³ CCPR/C/TKM/CO/2, 40-41 항

차별적이거나 차별을 가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⁶⁴.

47.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2015 베트남 방문 보고서에서 해당 국가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양심상의 이유로 무기 사용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민간대체복무 마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규약 제 18 조 제 3 항과 일치하게 진지한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사상, 양심,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에 위배되는 것이다⁶⁵.

48. 2013 년 분석보고서는 강제적 군 복무를 폐지하거나 중단하는 추세로 인해 군 복무 및 대체복무와 관련된 문제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언급하지만⁶⁶ 최근에는 반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2014 년부터 징병제를 처음으로 도입했고, (그루지아,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는 징병제를 다시 시행하고 있으며 (크로아티아와 스웨덴은) 징병제를 다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⁶⁷.

B. 공식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에 가하는 제약

49. 터키의 1 차 보고서에 대해 터키 대표단과 구두로 의견을 교환하던 중에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몇몇 의원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이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의 운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군 기관으로부터 일반인을 분리시키는 형법 제 318 조의 규정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기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표현의 자유와 조화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전달했다.⁶⁸ 이에 터키측 대표단은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제 34 호(2011)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답변했다.⁶⁹ 청원번호 2458/12 호 Savda v. Turkey(No.2) 사건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 2016.11.15 자 판결에서는 표현의 자유 위반을 선언하면서, 청원인에게 비금전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금으로 2,500 유로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 사건의 청원인은 “우리는 이스라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연대를 형성한다”는 제목의 글을 언론 앞에서 낭독했다는 이유로 5 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0. 우크라이나에서는 2015 년 2 월에 동원반대 동영상을 만들어서 군 복무 소집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다른 사람들도 거부할 것을 권고한 기자가 반역 및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합법적인 활동을 방해한 죄로 체포되는 일이 있었다. 1 심에서 3 년 6 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2016 년 7 월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판결을 파기했다⁷⁰.

C. 자원병의 양심적 병역거부

51. 현재 그리스 국내법에는 직업군인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조항이 없으며, 2005 년에 국방부가 결정한 바에 의하면 입영 이후에 제출한 신청서는 승인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받는 것이 불가능하다.⁷¹

⁶⁴ CCPR/C/UKR/CO/7, 19 항

⁶⁵ A/HRC/28/66/Add.2, 63 항

⁶⁶ A/HRC/23/22, 40 항

⁶⁷ 국제화해연대 및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한 정보

⁶⁸ CCPR/C/SR.2929, 4 항, 6 항, 27 항

⁶⁹ Ibid., 36 항

⁷⁰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한 정보; 2015.2.16 부터 5.15 까지 우크라이나의 인권상황에 관한 OHCHR 의 보고서, 제 72 항, 2015.5.16-8.15 까지 보고서, 71 항, 2015.8.16 부터 11.15 까지 보고서, 63 항, 2015.11.16 부터 2016.2.15 까지 보고서 141 항, 2016.2.16 부터 5.15 까지 보고서, 117 항, 2016.5.16 부터 8.15 까지 보고서, 115 항, www.ohchr.org/EN/Countries/ENACARRegion/Pages/UARReports.aspx

⁷¹ Contribution from the Greek National Commission for Human Rights.

D. 신청서 심사 과정의 불합리한 처사

52.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4 년 10 월에 이스라엘 정부의 4 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 면제를 신청할 경우 승인 또는 기각 여부에 대한 의견을 관할당국에 제시하는 특별 위원회의 심사절차와 특별위원회의 독립성 결여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민간 위원이 단 1 명이며 나머지 위원들은 군 장교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특별위원회를 온전히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고, 특별위원회의 심의절차에 심리(hearing)를 추가하고 거부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항소권(right to appeal)을 보장하도록 권고했다⁷².

53. 2015 년 11 월에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신분에 대한 신청서를 심사하는 특별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독립성 및 공정성의 결여에 대해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위원회의 심리(hearing)은 모든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그리스에게 신청서의 심사가 오로지 민간 기관의 감독 하에서 진행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⁷³. 2016 년 5 월에 보편적 정례 검토와 관련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두 가지 권고 사항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그리스는 이 권고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⁷⁴ 2016 년 9 월에 유럽인권재판소는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당사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Papavasiliakis v. Greece 사건에서 재판부는 의사결정 과정에 독립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청원인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신분 요청을 기각한 것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규약 제 9 조의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심사위원회의 제안에 따른 국방부의 초안 결정에 근거하여 국방 장관이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은, 특히 당사자가 주로 고위급 군 장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앞에서 인터뷰를 받았기에,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대한 안전장치라는 요건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⁷⁵. 뿐만 아니라 그리스 옴부즈맨에 따르면 종교적 사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 비해 이데올로기적인 신념에 따라 거부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관행이 있으며, 이 사실은 2007 년부터 2015 년까지의 공식 통계자료에서 반영되어 있다. 종교적 사유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인정받은 비율은 96%를 넘는 반면에 이데올로기적 사유를 가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인정받는 경우는 50% 또는 그 이하로 나타났다.⁷⁶

E. 불합리한 대체복무기간

54.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민간대체복무기간이 군 복무기간을 초과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규약 제 18 조와 제 26 조를 위반한 것이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3 년부터 2015 년 사이에 채택된 다수의 최종견해를 통해 몇몇 당사국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기간이 처벌적 성격을 띠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⁷⁷.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군 복무 및 민간대체복무 기간을 단축해주는 키르기스스탄 국내법에 관해 위원회는 군복무와 대체복무 기간을 정할 때에 비차별적 근거에 따를 것을 권고했다⁷⁸.

55.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위원 1 인은 대체복무 기간이 군 복무 표준 기간을 초과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에 해당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키프로스 대표단은 2015 년 3 월 위원회와의 구두 면담에서

⁷² CCPR/C/ISR/CO/4, 23 항

⁷³ CCPR/C/GRC/CO/2, 37-38 항

⁷⁴ A/HRC/33/7, 136.15 항과 136.16 항, A/HRC/33/7/Add.1, 3 면. 2012-2016 년 보편적정례검토의 2 차 회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해 총 26 건의 권고가 있었으나 당사국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22 건의 권고를 유의하고, 단지 4 건에 대한 검토를 수용했다. (<http://s.upr-info.org/2nTJXrY>).

⁷⁵ Papavasiliakis v. Greece

⁷⁶ See contributions from the Greek National Commission for Human Rights and from the Association of Greek Conscientious Objectors

⁷⁷ CCPR/C/AUT/CO/5, 33-34 항; CCPR/C/BOL/CO/3, 21 항; CCPR/C/FIN/CO/6, 14 항; CCPR/C/GRC/CO/2, 38 항;

CCPR/C/UKR/CO/7, 19 항

⁷⁸ CCPR/C/KGZ/CO/2, 23 항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사람은 사회대체복무 33 개월 또는 대체군복무 24 개월을 이행할 수 있으며, 대체군복무가 훨씬 힘든 업무를 수행하며 복무기간 내내 합숙소에서 지내므로 사회대체복무보다 짧은 것이라고 설명했다⁷⁹.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키프로스 방문 임명에 관한 보고서에서 당시의 민간대체복무는 군 복무보다 각각 7 개월 또는 9 개월 더 복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⁸⁰. 2016 년 7 월에 군복무를 24 개월에서 14 개월로 축소하고 민간사회복무를 최대 19 개월로 축소하는 새로운 법이 통과되었다⁸¹.

F.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분쟁 지역의 양심적 병역거부

56. 난민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 10 호 7 항에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징집은 국가만 시행할 수 있으며 비정부 무장단체가 특정 지역에서 실질적인 정부로서 권위를 행사하느냐에 관계 없이, 국제법에서는 이들에게 군 복무를 요구하거나 강제로 입영시킬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한다. 그러나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분쟁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역사적, 지정학적 배경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군사화가 이루어진 탓에 인권보호의 공백을 종종 감수해야 한다⁸².

57. 일례로 키프로스 북부 지역에 관해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조항이 없다는 것은 사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처벌의 위험을 감수한다는 뜻이라고 말하면서 군사훈련에 대해 서면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6 명에게 받은 정보를 공개했다. 특별보고관은 사실상의 관계당국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유에 부합하는 민간대체복무를 이행할 기회를 제공하되, 대체복무가 처벌적 효과를 갖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⁸³ 이 보고서의 준비 과정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의회 위원회”는 북부 지역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민간대체복무를 설립하는 가능성을 조사하는 중이며 2016 년 9 월에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 대표자들로부터 증거를 수집하였다.⁸⁴

58.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또한 몰도바 공화국 트란스니스트리아 지방에서 정규 군사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처벌당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병역에서 면제하거나 대체복무가 허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⁸⁵. 특별보고관은 몰도바 공화국 트란스니스트리아 지방의 “관계자”에게 종교 또는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을 구금하는 관행을 지체 없이 중단하고 그러한 거부자들을 위해 대체복무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⁸⁶ 2013 년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몰도바 공화국 트란스니스트리아 지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알려진 사람은 병역의무에 소집되지 않으며⁸⁷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민간대체복무 규정이 채택되었다.⁸⁸

59. 이 보고서를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남코카서스 지방의 분쟁 지역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관련하여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⁸⁹.

⁷⁹ CCPR/C/SR.3143, 21 항과 29 항

⁸⁰ A/HRC/22/51/Add.1, 67 항

⁸¹ 양심적 병역거부 유럽사무국에서 제공한 정보

⁸² Bielefeldt, Ghana and Wiener,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286-288 면

⁸³ A/HRC/22/51/Add.1, 68 항과 87 항.

⁸⁴ 국제화해연대에서 제공한 정보

⁸⁵ A/HRC/19/60/Add.2, 53 항과 69 항

⁸⁶ Ibid., 87 항.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도표, 18-21 면, www.ohchr.org/Documents/Issues/Religion/FollowUpCyprus.pdf.

⁸⁷ Thomas Hammarberg, Senior Expert, “Report on human rights in the Transnistrian region of the Republic of Moldova” (2013), www.un.md/publicdocget/41/, 43 면.

⁸⁸ 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과 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of Jehovah’s Witnesses.

⁸⁹ 양심적 병역거부 유럽 사무소, 국제화해연대 및 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of Jehovah’s Witnesses 에서 제공한 정보

V. 결론 및 권고사항

60. 국제법상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사상, 양심 및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에 내재한 권리이다. 이 보고서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2013 년에 인권이사회에 분석보고서를 제출한 이후로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적 발전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61. 일부 당사국에서는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석방하거나 대체복무기간을 군 복무 기간과 동일하도록 축소하는 법 또는 규정을 채택했다. 뿐만 아니라 몇몇 당사국의 국내법에서는 군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끝낸 사람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62. 동시에 몇몇 당사국은 지금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온전히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반복적으로 재판에 회부하고 처벌하는 사건들은 전과자라는 낙인이나 개인정보 공개와 마찬가지로 우려할 만한 사항이다. 뿐만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나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도 부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더욱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일부 당사국에서조차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마련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군 복무와 비교할 때 대체복무의 특성이나 기간으로 보아 사실상 처벌에 해당하거나 차별을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3. 군 복무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은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병역거부자 신분을 얻는 방법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전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당사국들은 평화주의자뿐만 아니라 일부 상황에서만 무력 사용이 정당화된다고 믿는 선택적 거부자에게도 거부권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징집병과 자원병은 군 복무를 시작하기 전이나 군 복무 전후 및 군 복무 중에도 병역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64.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종교적 신앙 또는 비종교적 신념의 성격을 이유로 차별받는 일 없이 대체복무 마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심문 절차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을 거부하는 당사국은 독립적이고 공평한 의사결정기관을 마련하여 각 신청자의 양심적 병역거부 의사가 진지한 것인지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신분에 대해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든 간에 독립적인 민간 사법 기구에 항소할 권리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당사국들은 대체복무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유와 양립할 수 있어야 하며 비전투적 또는 민간적 성격을 띠어야 하고, 공익에 기여하며 처벌적 성격이 아니어야 한다. 대체복무기간이 군 복무보다 길어지는 것은 군 복무를 초과하는 기간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65. 당사국은 누구도 자의적으로 구금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병역 신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젊은 남자들을 찾아낼 목적으로 무차별 체포를 해서는 안 된다. 당사국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이유로만 수감 또는 구금된 사람들은 석방해야 한다. 당사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해야 한다. 당사국들은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와 관련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차별하거나 ‘반역자’로 낙인 찍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국제국에서 병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박해의 공포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한 어떠한 조항도 존재하지 않거나 어떤 적절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난민 지위를 허용해야 한다.